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26 호 2023. 11. 2.(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41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42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43호[공유수면 실시계획승인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44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46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4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51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 고시]..... 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442호[효문동, 양정동 통·반 조정 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457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안]..... 9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3-13호[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3-1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3-15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40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3-16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8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3-17호[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6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3-18호[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41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최신정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매산로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공연	점용 면적	○ 33.0㎡
점용 기간	2023. 10. 27. (금) 12:00 ~ 15: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4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농소2동 주민자치회 한일수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찬생1길 24,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공연	점용 면적	○ 33.0㎡
점용 기간	2023. 10. 29. (일) 12:00 ~ 20: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43호

공유수면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연월일 : 2023. 10. 30.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A=24m², T=15cm)
3. 점용·사용의 장소 : 호계동 936-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58m²
 - 나. 기 간 : 2023. 1. 5. ~ 202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최진*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10. 30.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도시가스 배관)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1107-22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 19.80m²
 - 계속 : 1.21m²
 - 나. 기 간
 - 일시 : 2023. 10. 30. ~ 2028. 11. 18.
 - 계속 : 2023. 11. 19. ~ 2037.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경동도시가스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4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복구종합사회복지관장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동대8길 40 복구종합사회복지관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친환경 캠페인(플로깅) 및 친환경 체험부스 운영	점용 면적	○ 33㎡
점용 기간	2023. 11. 11. (토)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11. 1.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치매안심마을 현판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8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6㎡
 - 나. 기 간 : 2023. 11. 1. ~ 2037.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복구보건소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5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건의 준공검사확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성명 : 최진*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로

2. 공사 내용 : 인공구조물 설치[진출입로 58㎡(콘크리트 포장 24㎡ 포함)]

3. 점용·사용의 장소 : 호계동 936-1번지 일원

4.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3. 11. 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442호

효문동, 양정동 통·반 조정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통·반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일자 : 2023. 10. 31.

통·반 조정내역

구 분	통			반			비고
	현 행	조 정	증 감	현 행	조 정	증 감	
계	272	275	증 3	2,545	2,575	증 30	
농소1동	35	35	-	418	418	-	
농소2동	48	48	-	526	526	-	
농소3동	39	39	-	427	427	-	
강동동	32	32	-	204	204	-	
효문동	35	36	증 1	316	324	증 8	
송정동	40	40	-	384	384	-	
양정동	20	22	증 2	123	145	증 22	
염포동	23	23	-	147	147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457호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안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20여명
2. 모집분야 : 전문가 및 주민
3. 공고기간 : 2023. 11. 2.(목) ~ 11. 13.(월)(12일간)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11. 1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자격 증명 서류 1부(해당 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7.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복구 기획예산과 김 진
☎ 052-241-7103 / e-mail : jint620@korea.kr
8. 자격요건
(전문가)
 -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주 민)

-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의 실무활동가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사람
-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9.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정 심사위원 구성(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 신청자격, 구정 참여사항, 주요경력, 활동의지, 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2023. 11월말(예정) 개별통지

10. 기타 사항

- 공개모집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위원회에 3개 이상 중복 참여시 위촉되지 않습니다.
- 선정일 기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사항이 있는 사람은 위촉되지 않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예산과(김 진, ☎ 241-7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울산시 복구 정책자문위원회 신청서(전문가)

성명(한자)	연 락 처	사 무 실	사 진 (3cm × 4cm)		
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			
		이 메 일			
주 소					
소속(직위)					
현근무지					
최종학력 (전공, 분야)					
전문(관심)분야	<input type="checkbox"/> 경제관광	<input type="checkbox"/> 행정문화	<input type="checkbox"/> 복지환경	<input type="checkbox"/> 안전도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경력	○ ○ ○ ○ ○				
구정 참여사항	○ ○ ○ ○ ○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복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붙임 3	자기소개서
-------------	--------------

자 기 소 개 서

자 기 소 개	
지 원 동 기	
포부 · 활동 의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원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수당 지급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학력, 경력사항, 계좌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임기만료시까지
- 보존사유 :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임기기간 동안 보관 필요

【동의 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정책자문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정책자문위원 후보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 8.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위행위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3)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 상향 조정(안 별표 4)
-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

에 한해 허용(안 별표 4)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박재완 · 김정희 · 이선경

박정환 · 조문경 · 김상태

강진희 · 손옥선 · 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 8.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위행위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3)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 상향 조정(안 별표 4)
-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교·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3. 11. 2. ~ 11.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11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3. 겸직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4.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p>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p>공개사과</p>
6. 그 밖의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

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징계기준(제11조 관련)			[별표 3] 징계기준(제1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 신고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영리 거래금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불이행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 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 2. (생략)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 나. (생략)

<신설>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

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p>다. ~ 만. (생략)</p>	<p><u>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u></p> <p>라. ~ 바.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p>
---------------------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 30.>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

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4) 의견서 : 하단 참조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손옥선 · 김정희 · 이선경

박정환 · 박재완 · 조문경

김상태 · 강진희 · 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3. 11. 2. ~ 11.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u>의정활동비</u> 및 <u>여비</u>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u>의정활동비</u> 및 <u>여비</u>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신 설></p>	<p>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p> <p>① ----- <u>의정활동비</u>, <u>월정수당</u> -----.</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u>의정활동비</u> 및 <u>월정수당</u>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u>의정활동비</u> 및 <u>월정수당</u>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p> <p>1. <u>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p> <p>2. <u>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u></p>

<신 설>

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
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
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
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추천 방법,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4) 의견서 : 하단 참조

4. 그 밖의 사항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박정환·김정희·이선경

박재완·조문경·김상태

강진희·손옥선·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추천 방법,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다.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의 중지 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 제8조의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3. 11. 2. ~ 11.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진출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패)

소 속

직 성명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패)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 ○ ○ 인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 10. 8.>

□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인사운영의 자율성·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안 제5조)
- 시험위원의 기피 및 회피 요건 추가(안 제10조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안 제13조의2)
-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근거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5의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7의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4. 그 밖의 사항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김상태·김정희·이선경
 박정환·박재완·조문경
 강진희·손옥선·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인사운영의 자율성·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안 제5조)
- 시험위원의 기피 및 회피 요건 추가(안 제10조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안 제13조의2)
-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근거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5의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7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 제64조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3. 11. 2. ~ 11.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영64조제2항의 각 호”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0조제4항 중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0조의2의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등의 가산점)”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5 비고 1. 단서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의2에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3 가목 녹지 직렬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별지 제1호서식의 제1호 및 제2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하단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7의3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1. <u>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u>에는 과오납한 금액</p> <p>2. <u>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u>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p> <p>3. <u>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u>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영64조제 2항의 각 호</u> ----- ----- -----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③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u> ----- ----- -----.</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p> <p>2.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따른 지원대상자</p>

<신 설>

제10조(시험위원) ① ~ ③ (생략)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0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

제13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제20조의2(자격증 가점) (생략)

<신설>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 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0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 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영 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생략)

※ 비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의2. ~ 6. (생략)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생략)

※ 비고

1. ~ 3. (생략)

<신 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현행과 같음)

※ 비고

1.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의2. ~ 6.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현행과 같음)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

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 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략)			
녹지	산림 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신설>
	산림 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신설>
	산림 이용	기술사: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에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에,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조경, 산림	<신설>
	(이하 생략)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생략)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현행과 같음)			
녹지	산림 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 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 이용	기술사: 산림 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에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에,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이하 생략)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생략)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p>
<p>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p> <p>(생략)</p>	<p>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p> <p>(생략)</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p>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전문개정 2009. 2. 6.]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10. 8., 2022.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1.>[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1. 1.]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10.>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 산불방지 활동 및 산불진화(안 제7조 ~ 안 제8조)
-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및 보험가입(안 제9조 ~ 안 제10조)
-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6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문화재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동력과 활동성 있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

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불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

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 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안 제5조~제6조)
-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포상(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3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 산책이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조성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